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2019. 7.

NRF 한국연구재단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CONTENTS

발간사

용어정의

대학기술 창업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길라잡이

Part1 발명(Invention)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12

1.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자유발명) 12
2.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22
3. 공동발명자 인정과 발명기여도 산정 31

Part2 창업(Start-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44

1. 교원창업의 신고 및 자격요건 44
2. 교원창업기업의 대학자원 활용 54
3. 실험실 기반 대학(원)생 창업에 대한 대학의 지원 59

Part3 기업 성장(Scale-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72

1. 교원창업 후의 연구활동 72
2. 교원창업 후 관리 및 지원 79

참고문헌 91

〈참고자료〉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92

발간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는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열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학은 연구개발을 통해 수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기반 창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실 내에 축적되어 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달리 기술기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장비와 시설, 연구개발비 등 기본적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소유권자인 학교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술의 소유구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기술의 사업화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간에 다툼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창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창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risk)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우리보다 일찍이 대학 정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대학이 대학 내 · 외부와의 사회적 신뢰관계를 조성하고 대학의 명예를 조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과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기업 설립 자체에만 집중되어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관계되는 협력주체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기술기반 창업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이 주체가 되어 다툼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정책 ▲법 · 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대학 기술기반 창업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해 정리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향후 대학과 창업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안내서에 담겨진 내용들이 대학의 실정에 맞는 학내 정책으로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내서가 발간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필진 및 대학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용어정의

1. 교원창업

현행 법규 어디에도 교원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대학에서는 "교원창업규정" 또는 "실험실창업규정"을 두어 교원의 창업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2. 실험실창업

대학의 자산(특허,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이 대학 내부에 위치한 경우를 통상 실험실창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실험실창업 제도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없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호 및 제18조의2)에 "실험실공장"의 정의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실험실창업이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3. 교원창업 관련 휴 · 겸직제도

교원의 창업활동과 관련된 휴직이나 겸직제도는 대학마다 다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6조의2)은 대학교원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휴직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4. 학생창업

통상 대학에서의 학생창업은 학부, 대학원(석, 박사)을 포함한다. 학생창업은 교원의 실험실창업과는 달리 대학으로부터 별도의 겸직 허가 및 창업허가 등을 받지 않으며,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일반인의 창업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공동발명(자)

우리나라는 공동발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공동발명자"의 "공동"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2명 이상의 발명자 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의 유무가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6.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길라잡이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길라잡이

본 안내서는 기술기반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술창업 관련 제도를 갖추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대학과 교수, 대학과 학생, 교수와 학생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 간에는 연구성과의 소유권 문제, 대학 보유기술의 창업기업으로의 이전문제, 교원의 창업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창업기업의 대학 보유자산 활용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과 학생 간에는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여부, 직무발명일 경우 창업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는 공동발명의 기여도 문제, 학생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경우의 기술이전과 지분 배분문제, 학생의 창업기업 참여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관한 주요 이슈들과 이에 대한 관련법규와 운영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과 창업교원들은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명단계, 창업단계, 기업 성장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길라잡이

대학 기술기반 창업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학 에 대한 권고사항

| 발명단계 |

- 직무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과 교원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은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공동발명자 간의 기여도 산정기준 등을 학내 규정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발명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입니다. 대학은 직무발명 보상대상에 대학(원)생이 포함될 수 있음을 학내 규정에 명시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료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창업단계 |

- 대학은 교원창업 시 창업교원과 다른 교원, 창업교원과 대학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창업 신고 및 자격요건, 대학자원(시설, 장비, 특허 등)의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교원창업 후 특허의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원창업 승인 시 발명완성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 · 협의하도록 하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 대학 소유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대학–교원–학생 3자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창업(준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학생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이나 투자자 등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기업성장단계 |

- 대학 실험실에서의 연구활동과 창업기업에서의 연구활동의 경계가 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대학은 교원창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학은 교원창업 승인 이후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하고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길라잡이

대학 기술기반 창업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창업교원 에 대한 권고사항

| 발명단계 |

- 대학교원이 재직 중에 발명한 경우는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직무발명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대학의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R&D과제에 대학(원)생이 공동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학생들에 대해 해당 발명의 기여지분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단계 |

- 창업을 하고자하는 교원은 대학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겸임 · 겸직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학의 시설 및 장비 등은 대학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업교원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교원창업기업이 대학 소유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교원이 발명한 경우라도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성장단계 |

- 창업교원은 창업 후 창업기업에서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에도 대학의 지재권 규정 및 대학창업규정 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교원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 이후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교원에 대한 창업승인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업교원은 창업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PART01

발명(Invention)단계 이해관계 조정

1.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자유발명)

2.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3. 공동발명자 인정과 발명기여도 산정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art1
발명(Invention)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01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자유발명)

기본방향

- 대학교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나, 전공 및 연구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발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유발명으로 간주됩니다.
- 소속 대학 및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의해 창출되어진 모든 발명은 직무발명이며, 소속 기관이 해당 발명을 소유합니다.
- 대학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발명자인 교수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교수의 발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발명입니다.**

›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직무 중의 하나로 연구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고, 연구를 할 때에는 직 · 간접적으로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나 실험기자재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기 전공을 연구한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감사원 · 특허청의 직무발명 판단시 고려사항, 2003).

■ **그러나 산학공동연구, 실험실창업 등 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해당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대학과 교원 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 등이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의 주체로서 ① 종업원 ② 법인의 임원 ③ 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교수는 종업원, 국립대학의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무발명 개념을 반대로 해석하면, 종업원의 직무 · 사용자의 업무 범위,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교수를 중심으로 다수의 대학원생 및 기업 등이 참여하게 되어 특허출원 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8.10.17. 선고, 2007가 합 14622) 1.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발명자라 함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하여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술의 착상에만 그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한 조언자, 단순한 보조자, 자금제공자, 도급인이나 명령자는 진정한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은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것을 결정한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법정기간인 4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상,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① 정부 R&D 과제 협약 시 특허성과의 개인소유를 허여한 경우 ② 연구기관 유형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 · 등록한 경우 ③ 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소유권 포기 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한 경우입니다.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1. 직무발명을 사용자인 대학의 동의 없이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2. 교수는 자유발명을, 대학은 직무발명을 주장하는 경우
3. 파견 중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대학과 파견 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4. 대학이 비용 등의 문제로 승계를 하지 않았을 때 발명자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경우

1-1 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의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한 사례

- **대학교수가 외부 연구원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 · 완성한 기술을 대학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음을 유사 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그 특허권의 취득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은 자기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종업원 A 이사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B)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❶-2 공동연구 결과물을 공동출원하지 않고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만 발명자로 기재된 사례

■ **발명자(A)가 소속 대학(B)에 공동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회사(C) 단독의 특허출원서에서 발명자로만 포함됨으로써, 대학(B)에게 특허로 인한 수익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발명자(A)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발명자와 회사 간 악의적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회사(C)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C)가 출원인 변경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대학(B)은 보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❷ 교수의 전공분야와 다른 기술분야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분쟁 사례

■ **(상황) ○○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의 '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대학(원고)과 교수(피고)와의 소송**

* '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에 관한 발명은 일회용 물티슈로 사용되는 스킨 티슈용 펄프지에 세안액과 피부 컨디셔닝제 등을 함침하여 세안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술분류상 섬유나 화학 분야, 용도상으로 화장품 분야에 속하는 발명임.

›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시에 피고는 '재료역학1', '설계제도'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1. 3. 1. ○○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9. 12.까지 ○○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판례) 피고가 교수로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계 분야에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섬유나 화학 또는 화장품 분야에까지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❸ 타 기관으로 출장을 나간 교수가 발명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사례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요건인 '종업원등'의 의미, 그리고 타 회사로 출장을 나간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또는 사내창업을 한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이를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사례는 대학교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발명자 X가 발명진흥법상 A공사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X의 특허발명이 A공사의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A공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휘, 명령까지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 · 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법원은 A공사의 종업원이 B회사에 출장 가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이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였는바, 출장기간 중 B회사의 사원이 되어 B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B회사의 지휘 내지 명령까지 받았다면 B회사의, 그 반대라면 A공사의 직무발명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종업원이 사내창업을 위한 휴직을 하여 창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선 피고 X는 사내창업 휴직기간 동안 원고 A공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연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며, 원고 A공사에게는 위 기간 동안 피고 X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 X는 피고 B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 B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 B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X의 사내창업 휴직기간 중에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원고 A공사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특허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교수 개인 신분으로 자비를 들여 출원하거나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국내 일부 대학은 직무발명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특허출원 중 대학 산학협력단이 해외 특허에 대한 미승계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예외조항으로 대학교수가 개인비용을 통해 해외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양도 등을 통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자가 악의적인 미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출원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개인비용'을 확대 해석하여 의도적으로 학교나 산학협력단, 연구실의 간접비 또는 연구실 (기타) 비용, 연구 마일리지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비용의 범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과 교원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교수가 재직 중 발명한 경우는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되므로, 교수는 직무발명 여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대학의 관련 부서와 상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대학은 직무발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는 중대한 사안임을 교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미신고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내출원은 진행하였으나 해외출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반면, 발명자가 해외출원을 진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산학협력단에 있으나, 발명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발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발명자의 해외출원 요청을 문서로 받고, 산학협력단은 해외출원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을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의 단서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를 참작할 때 해당 발명자에게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02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기본방향

- 대학(원)생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대상에 대학(원)생이 포함될 수 있음을 학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료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학생이 R&D 과제에 참여하여 창출한 발명과 학내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창출된 발명에 대한 취급방식이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발명자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직원의 발명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대학 중 약 47%가 교직원에 대한 구분 없이 발명자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 학생신분에 대한 발명자 혹은 종업원 인정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3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합니다(박지환, 2015).
- 여기서 핵심 이슈는 '조교나 대학(원)생이 학생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원)생을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이 경우 개별 대학의 직무발명규정 등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의 주체로서 ①종업원 ②법인의 임원 ③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으나, 학생이 어떠한 경우에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여부는 대학(원)생이 종업원과 같은 직무발명의 주체인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직무발명 외의 발명은 발명자(학생)에게 속하며,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승계하고 싶을 경우 발명자(학생)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명(자유발명)을 미리 대학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토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학생이 발명진흥법상 종업원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판단

❷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부적 계약 등으로 발명자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경우

- **학생은 대학의 교수와 달리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어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좁은 의미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입니다(박준석, 2010).
  - 판례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종업원의 지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 · 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 이러한 판례 취지 등을 볼 때 학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종업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대학과 별도의 계약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학에서는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직무발명의 규율대상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여 대학(원)생을 광의의 종업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직무발명 규율 대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식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며 교직원 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원 등"이란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조(정의)
***한양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1조(목적)

■ **한편 학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판례는 없지만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에는 다음 표와 같이 직무관련성(해당 조문 밑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조(정의)
***한양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조(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종업원등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사업 및 프로젝트 연구에서 발생한 발명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 **일본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직무발명가이드라인은 '학생이 행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연구 프로젝트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학과의 계약이 존재하여 고용관계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 직무발명 가이드라인 및 특허법 |

직무발명 가이드라인 제3조 제6항 제3호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행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 중에는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대학과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학생이 해당 연구프로젝트 중에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익에 대한 계약, 근무규칙 등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당한 이익으로 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35조 제7항

상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제5항의 규정보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받을 만한 정도의 이익내용을, 그 발명에 의한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수, 그 발명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부담, 책임 및 종업원 등의 처우 또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학생의 자유발명에 대한 대학 승계는 가능하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일본 특허청, 2016).

|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6항의 지침에 관한 Q&A |

Q)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만들어 내는 이른바 자유발명(직무발명은 아닌 것)에 대해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특허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대학과 학생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대학과 고용 관계없이 학생이 만들어 내는 이른바 자유발명(직무발명 아님)대해서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특허 받을 권리를 취득할 경우,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해당 권리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의 해당 규정은 그대로 둔 채) 교직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 즉, 대학의 교직원에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며, 그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계약교수,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설명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대학의 (광의의) 종업원에 속하게 되며, 그 대학(원)생이 대학(지도교수)으로부터 연구주제를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창출한 발명은 '직무범위 요건'도 충족하게 되므로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대학원생은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한 대학원생은 대학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해석입니다.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R&D 과제에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공동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에 대해 해당 발명의 기여 지분을 인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 발명에 대한 법적 지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해당 발명에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즉 대학(원)생 등을 통상 직접 지도하는 교수, 발명을 위한 시설과 자본을 제공하는 대학, 나아가 협력관계에 있는 산업체의 이익을 해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박준석, 2010).
- **학생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교수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과 관련한 고용계약서의 유무, 보수의 수령 유무와 같은 1차적 판단기준에 이어 교수와 학생 간의 지위 · 감독 관계의 존재여부나 대학이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발명하였는지 등을 근거로 직무발명임을 판단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나동규, 2014).**
- **학생 발명 취급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지침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학 지침에서 학생발명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프로젝트 범주 내에서는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합니다.
  - 다만, '종업원성'이 인정되면 타 법률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의 건의사항

* 다음은 학생연구원이 연구실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8개 대학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 12월 11일과 12일 각각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 학생연구원 고용계약 법안에 대한 우려 |

대학과 학생연구원이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사제관계에서 고용관계로 변질됨에 따른 대학 본연의 정체성 상실 ▲연구와 실험은 학위 이수 과정 중 학업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학업과 근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함 ▲고용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방세 종업원분 등 부담 의무에 따른 대학 당 40억 원에서 200억 원 추가 재정 부담 발생 ▲상시근로자 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단기 계약직 및 비정규직 양산 문제 ▲노무 업무 증가에 따른 대대적 관리인력 충원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재원 부담 ▲학생의 법정부담금 비용과 퇴직금을 연구비에서 부담할 경우 다른 비목의 사용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안게 되는 연구자의 부담 ▲연구비 수주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 보장 어려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시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연구지도 및 실험 지시 어려움 ▲연구 활동 전반 위축돼 연구 결과의 질과 연구비 수주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 부여를 위한 근무상황관리 근로감독 등을 연구자가 해야 함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부담 ▲학생연구원의 4대 보험 가입 시 연구비에서 개인 및 기관 부담금 모두 부담에 따른 인건비 실수령액 감소 ▲현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피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내 계약 체결하는 편법 발생할 소지로 저임금 학생연구원 양산 결과 초래 ▲근로자 신분의 학생연구원은 학생에게만 지원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 제외됨 ▲미취업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 행복주택 지원제도 등의 제한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신분 박탈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이 교수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에 내부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명자의 권리나 보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포기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는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은 경제적인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박준석,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7가합101887 판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구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다.

› 따라서 대학이나 교수가 보상금 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하기로 한 학생과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03 공동발명자 인정과 발명기여도 산정

기본방향

- 대학은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학내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자 간 기여도 산정기준을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발명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저자와 발명자의 지위에 대해 법률로 정한 통일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저작 및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 대학에서 R&D 활동을 하는 기본 조직은 연구실(lab)로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연구 성과인 과학논문(paper) · 특허(patent)의 저자(author) · 발명자(inventor)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 여기서 핵심 이슈는 조교나 대학(원)생이 학생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원)생을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 경우 개별 대학의 직무발명규정 등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와 성명표시권(특허법 제42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허출원서 및 특허증에 발명자로 표시될 권리를 가집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특허법 제33조 2항).**
  - 특허청 심사지침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들 각각이 기술적인 상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공동발명자로서의 인정이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 때문입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이 기술이전되어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초하여 발명자에게 기술료 보상금이 배분됩니다.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므로 보상금을 그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 즉,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특허출원 시는 기재되지 않지만 기술료가 발생할 때 보상금 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대학은 학내 구성원에게 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보상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학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기관의 예약승계 또는 별도 계약에 의해 대학으로 승계되므로, (공동)발명자는 발명 완성 시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각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기재합니다. 공동발명자로서의 기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보상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 **발명진흥법(제15조)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학내 구성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학 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공동발명자로 인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발명을 했음에도 발명에 대한 기여율을 낮게 인정받은 경우

❷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음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❶ 대학(원)생의 공동발명 직무발명 기여도에 대한 분쟁 사례

■ **(미국 사례) 하버드 대학의 공동발명자인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교수를 상대로 공동발명 기여율 조정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 2005년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성과가 Tetraphase Pharma라는 기업으로 기술이전(상용화 시 1조원 이상의 가치) 되었습니다.

› 해당 기술료는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로 지도교수에게 50%, 해당 논문 제1저자인 원고에게 15%, 다른 공동연구자 2인에게 각 15%, 나머지 1인에게 5% 배분하였습니다.

› 이에 논문 제1저자인 원고가 반발하자 지도교수에게 50%, 해당 논문 제1저자인 원고에게 18.75%, 다른 공동연구자 3인에게 각 11.25%, 10%, 10%로 수정제시하고 이를 원고도 서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하버드대학을 떠나 벤처투자회사(Venture Capital)로 취업한 이후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화해로 종결되어 자세한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례) 기업이 대학교수에게 발명을 의뢰하였고 지도학생도 발명에 관여하였는데 기업과 교수만 공동발명자로 하여 기업명의로 출원, 등록받은 것에 대해 지도 학생이 특허지분이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 대학의 지도교수 A, 석사과정 대학원생 B와 C회사의 연구원 D는 산학협력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완성된 발명을 C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하면서 발명자로 A교수와 D연구원만 올리고, 대학원생 B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등록 후 대학원생 B가 진정한 공동발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와중에 A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가로 미국에 8개월가량 체류하면서 이메일로 대학원생과 실험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그 해결방안을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원생 B는 시제품의 성능평가 등 실험을 수행하고, 특허명세서 초안 작성도 담당하였습니다.

› 그 후 작성된 대학원생 B의 석사학위 논문도 특허출원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하면서 논문의 공동저자로 지도교수 A와 대학원생 B로 기재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학원생 B를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기여율에 따른 지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❷ 공동발명의 인정 기준의 사례

- **우리나라는 공동발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공동발명자"의 "공동"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2명 이상의 발명자 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대법원, 2001)의 유무가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상의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정부 또는 기업(기관)의 주도에 의해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 공동연구계약서 ▲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 만약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발명 행위를 한 이후 몇 년 간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발명자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협력(collaboration) 또는 관계(connection)가 필요합니다(Kimberly-Clark 사건, 1992).
  - 두 명의 직원이 비록 동료였다고 해도 서로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경우는 공동발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Van Otteren 사건, 1960).
- **공동발명자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발명자는 '집합적 개념의 개인들(individuals)'로서 '공동발명의 주제를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들 중 1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 물리적으로 함께 또는 동시에 작업하지 않은 경우, ▲ 발명자 간 기여도의 종류 또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특허법 조항의 해석상, '일부 청구항의 발명에만 기여한 공동발명자도 전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국 ETHICON 사건(1998년)의 판결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조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항 기재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기여했음이 명확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❸ 진정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사례

(한국 사례)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진정한 공동발명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구분	불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	
기준 2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기준 3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한 경우	

|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	
기준 2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기준 3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기준 4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기준 5	이상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 화학발명에 적용기준 사례 |

구분	불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기준 2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	

|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구분	불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관리직 지위에서 단순히 일상의 일반적 관리를 행한 자	
기준 2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단순히 좋고 나쁘다는 의견을 부가한 자	
기준 3	타인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한 자	
기준 4	단순히 일반적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행한 자	
기준 5	타인의 착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순히 도면작성, 시작(試作), 실험만을 도와준 자 또는 문서정리를 한 자	
기준 6	개량발명(A×B)의 토대가 된 발명(A)의 발명자	
기준 7	연구비 지출 업무만을 행한 자	

|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새로운 착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발전, 실현시킨 자	
기준 2	타인의 착상에 새로운 착상을 첨가하여 발명의 완성에 이르게 한 자	
기준 3	타인이 행한 실험, 시험의 중간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부가하여 발명의 완성에 이르게 한 자	
기준 4	약간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착상을 하고, 다시 별도의 새로운 착상을 첨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5	불완전한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새로운 착상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6	타인의 발명을 토대로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개량)하는 발명을 한 자	

(ETRI 사례) ETRI는 2014년 10월부터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을 개정하여 공동발명자 및 기여자에 대한 기여도 배분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TRI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자를 ① 발명자와 ② 관리자로 구분하여 발명자 판정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발명자 지분확인서'에 발명자별로 인정한 근거를 아래 표를 기준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발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로서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인정 기준	비고
기준 1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하여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	
기준 2	발명을 구체화하기에는 약간의 불완전한 신규의 착상을 하고, 타인에 의해 일반적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3	구체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불완전한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신규 착상을 가미한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4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량하여 발명을 한 자	
기준 5	도저히 구체화할 수 없는 정도의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생각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 관리자로서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인정 기준	비고
기준 6	구체적인 착상을 부하에게 지시하여 그 발전 및 실현을 명령한 자	
기준 7	부하가 제출하는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하여 다시 별도의 새로운 착상을 가미한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8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기준 9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❹ 공동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 간의 기여도 산정 사례

- **공동발명과 관련된 분쟁은 대개 원고 본인이 당해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자에 의해 시작되게 됩니다. 즉, 클레임의 기재 등에 의해 규정된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착상한 주체이며 착상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김미경, 2013).**
  - 따라서 특허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 간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정차호(2011)는 청구항별로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해당 요소별 가중치를 설계하고,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3항 (청구항)	A 요소 (중요도 0%)			B 요소 (중요도 0%)			C 요소 (중요도 50%)			D 요소 (중요도 30%)			E 요소 (중요도 20%)		
	갑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갑	을	병
	–	–	–	–	–	–	60%	40%	0%	50%	20%	30%	40%	30%	30%

› 이 방식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공동연구자 갑, 을, 병의 공동발명에 대한 개별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갑의 3항 공헌도 = 0.5×0.6+0.3×0.5+0.2×0.4 = 0.53 = 53%
- 을의 3항 공헌도 = 0.5×0.4+0.3×0.2+0.2×0.3 = 0.32 = 32%
- 병의 3항 공헌도 = 0.5×0.0+0.3×0.3+0.2×0.3 = 0.15 = 15%
- 각자의 전체적 공헌도 = (각 항 공헌도 합) / 전체 항 수

■ **(일본 사례) 지바대학은 공동발명자 간 기여도 배분을 위한 구체적 배분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A의 착상에 구체성(실험가능)이 있는 경우 |

구분	기준	배분비율
기준 1	여기에 B가 사소한 착상을 부가한 경우	A : B = 4 : 1
기준 2	A가 깨닫지 않았던 착상을 B가 부가하여 완성시킨 경우	A : B = 3 : 2
기준 3	B가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요건을 찾아낸 경우	A : B = 2 : 3

| A의 착상에 구체성(실험가능)이 없는 경우 |

구분	기준	배분비율
기준 1	A는 단지 방법을 희망적으로 말한 경우	A : B = 1 : 4
기준 2	A가 힌트를 주어 B가 완성한 경우 ※ 구체성은 없지만, 문헌 등을 이용하여 큰 개념 또는 실마리를 제안한 경우	A : B = 2 : 3

| 착상이 토의에 의한 경우 |

구분	기준	배분비율
기준 1	관계자 간 대등한 토의에 의한 경우	A : B = 1 : 1
기준 2	A의 주도하에 토의가 진행된 경우	A : B = 4 : 1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공동발명자 결정과 발명기여도 배분에 대한 공동발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관련 제도를 대학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투명한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발명기여도 배분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관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대학의 연구실내에서 관행적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공동발명자 결정과 발명기여도를 정하는 방식은 기여도가 전무한 공동연구자의 무임승차 및 이로 인한 동료 연구자의 박탈감, 발명기여도 등에 대한 연구실내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자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허에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 산학협력단은 해당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 보상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공동발명자 결정과 발명기여도 배분에 대한 기준을 대학 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문서로 알려야하며, 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학 구성원과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 **발명자에 속하는 대학원생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최소 기여율을 규정하여 상대적 취약자인 대학원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02

창업(Start-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1. 교원창업의 신고 및 자격요건
2. 교원창업기업의 대학자원 활용
3. 실험실 기반 대학(원)생 창업에 대한 대학의 지원

Part2
창업(Start-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01 교원창업의 신고 및 자격요건

기본방향

- 대학은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창업교원과 다른 교원, 창업교원과 대학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창업을 하고자하는 교원은 대학관련 규정(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겸임 · 겸직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창업을 해야만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현행법규는 교원창업을 위해 휴직 · 겸임 ·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교원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개념), 자격요건, 신고와 승인 등의 기준 그리고 대학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해, 국내대학은 교원창업에 대한 대학 내 정책수립 및 관련규정의 제 ·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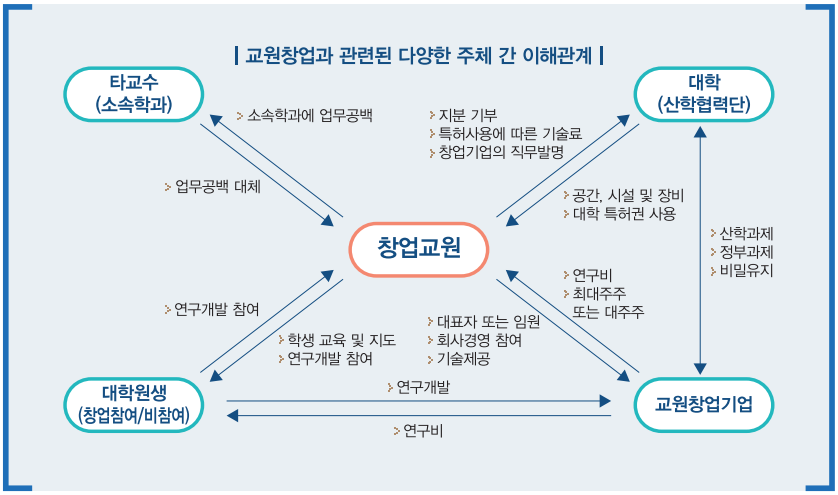

출처: 구본진 등(2018)

- **창업교원이 휴직이 아닌 겸임 · 겸직으로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해서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서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창업을 위한 휴직 · 겸임 · 겸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및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 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해 5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5. 18., 2018. 3. 13.〉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 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5. 5. 18.〉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 ·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교원창업을 승인하는 바람직한 절차는 무엇이며, 승인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❷ 교원창업의 자격(교원범위, 자격제한 등)요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요건 등은 무엇인가?

❸ 창업교원은 대학에 지분을 기부해야하는지? 기부한다면 적정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기부받는 대학의 주체는 누구인지?

❶ 교원창업의 승인절차 및 위원회 구성관련 사례

■ **교원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창업을 해야만 합니다.**

› 통상적으로 신청단계(소속학과 및/또는 단과대학 승인 후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 검토단계(교원창업심의위원회), 승인단계(교무처 겸직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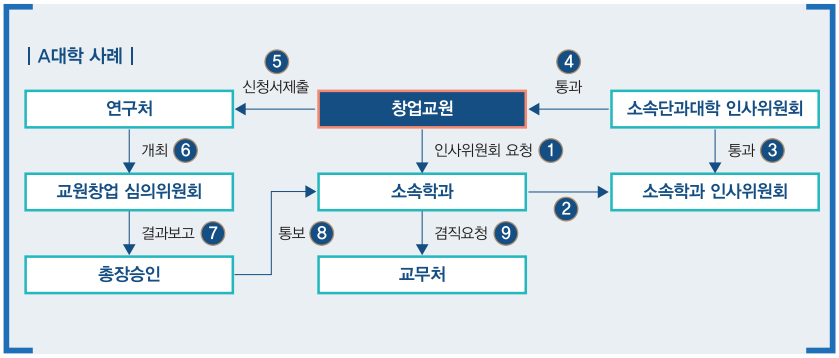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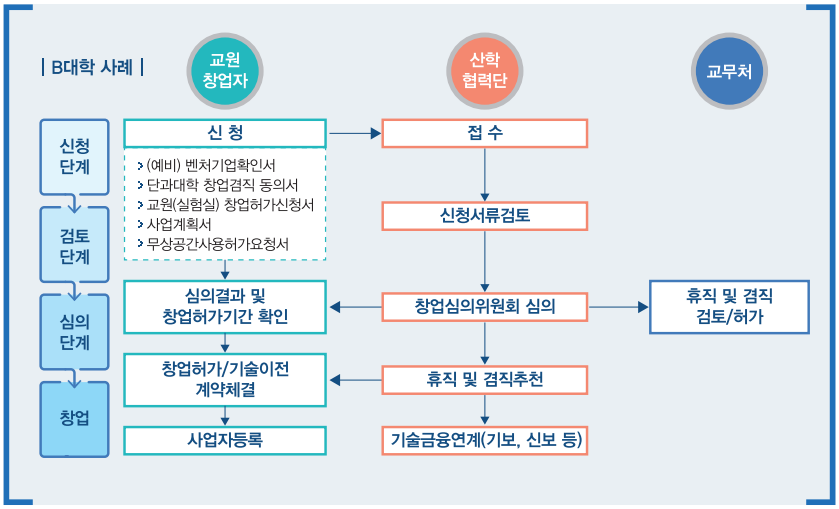

■ **교원창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화한 대학들 중 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학도 있고,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둔 대학도 있습니다.**

› A대학은 연구처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 부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B대학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C대학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D대학은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며 내부 창업 교원 중 일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타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인 이내로 위촉 및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교원창업의 자격요건 사례

- **교원의 창업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정년교원 또는 비정년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임교원 등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교수 임용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교원에 한하여 교원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A) 일부대학에서 교수 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교원에 한하여 교원창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B) 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교원이며,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해서만 교원창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례C) 교원채용 시 정책적으로 창업 가능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교원창업 자격요건에 대학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 (사례D)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도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학과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통과하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3년 미만인 교원이라도 창업 아이템이 학교나 국가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겸직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E) 기타 사례로, 상기와 같은 기한요건 제한에 추가하여 예비벤처기업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및 공간사용허가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공간 확보 여부, 벤처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해서만 창업자격을 최종적으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원은 교원창업과 같은 사적인 교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은 창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기존 교원들과 대학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내사례)** 많은 국내대학이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대학에서만 창업교원의 허용범위를 소속학과 전체교수의 5분의 1이하로 한정하는 방법, 소속단과대학 전체교수의 8분의 1이하로 한정하는 방법 또는 창업기업의 기업 활동시간을 교육 및 연구 활동시간의 5분의 1로 한정하는 방법 등으로 교원창업기업과 타 교원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대학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이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창업 이슈를 포함(외부 컨설팅 등)하여 자신의 근무기간 중에는 각 분기별로 교내에 물리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머물도록 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하는데 1년에 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40~5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 해석상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야 교원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사례1)** 국내대학의 경우 대부분 대표자 또는 임원에 한하여 이를 규정화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대표 또는 임원으로 겸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내사례2)** 일부대학에서는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교원이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부터 교원창업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1)** MIT, 스탠포드의 경우 교원이 직접 창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며, 제자가 실험실창업한 기업의 CTO 역할에 집중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교원창업에 대한 겸임 · 겸직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원창업기업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❸ 교원창업기업의 대학 지분 기부 사례

■ **교원창업 관련 규정이 있는 대학의 경우, 창업교원은 대학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 관련 특허의 사용에 대한 승인 등의 이유로 대학에 창업기업의 주식을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A대학은 창업기업 초기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B대학은 교수 소유 지분의 10%을 원칙하고, C대학은 창업기업의 5%를 원칙으로 하되, 창업기업의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E대학은 창업기업 보통주식의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되, 다만 순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경상기술료 방식의 로열티로 매년 지불하거나 순매출액에 대한 기부를 원할 경우 이에 관해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대학 귀속 지분	비고
A대학	교원창업기업 지분의 10%	
B대학	교수 소유 지분의 10%	보통주식의 10%를 기부
C대학	자본금 1억까지는 회사 지분의 5%, 그이상은 500만원 상당의 지분	매출액 0.5~3% 별도
D대학	없음	기업 IPO시 자율적 기부
E대학	교수 귀속 지분의 30%	
F대학	자본금에 (2%-[1.5%(자본금-1억 5천만원)/자본금])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기업 양도(합병)시 별도의 주식양도 조항 존재

■ **교원이 창업기업 주식의 일부를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대학 내 어느 기관에 주식을 기부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A대학의 경우 지분은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교내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지분 기여의 합이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B대학은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의 겸직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매출액에 대한 기부 및 지분투자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창업 관련 사항은 학교 규정 및 개별적인 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원창업으로 인해 소속 학과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원창업 승인 기준, 자원 활용에 대한 비용 산정 및 지급 기준 등 일정한 제약사항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학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겸임 · 겸직을 승인받는 경우 교원의 본분인 교육 및 연구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는 교원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교원창업으로 대학 또는 국가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적 파급력이 큰 창업아이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창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원창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해 소속학과의 업무행정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창업 승인 절차에 있어서 먼저 소속학과 또는 소속단과대학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대학본부 내 설치된 교원의 창업을 심의하는 기구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원창업을 심의하는 기구에서는 사업타당성 등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창업 시 학교에 대한 재정기여 및 교원의 겸직 · 휴직의 타당성까지 사전에 검토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원창업을 심의하는 교내 교수들의 경우 사업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교원창업을 심의하기 전에 교내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창업기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은 후 교원창업 심의 시 위원들이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주식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창업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취득하게 되면 5%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 금지).
  - 단, 주식 5% 초과시 증여세 과세 제외를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주식취득을 주무관청에서 인정받으면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주식기부의 기준을 창업기업이 아닌 창업교원이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증여세 기준에 대한 계산상의 착오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학에 주식기부 외에 추가적으로 대학에 재정기여 계획을 제시하거나 대학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 기부하는 지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학의 연구장비 관리, 연구결과물의 소유 · 관리 및 지식재산권 소유 · 관리 역할을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보다는 산학협력단에서 창업교원이 기부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이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학창업기업의 통합관리 차원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02 교원창업기업의 대학자원 활용

기본방향

- 대학의 시설 및 장비 등은 대학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업교원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교원창업기업이 대학 소유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교원이 발명한 경우라도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창업은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과 유관한 분야에서 창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창업교원의 실험실 장비뿐만 아니라 대학의 시설 및 인프라와 창업교원 자신이 발명한 특허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창업교원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 및 실험실 장비 등은 대학의 시설 및 인프라이고 비록 창업교원 자신이 발명한 특허라 할지라도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사용되는 이러한 실험실 장비와 특허에 대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사용승인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의 자산(특허,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대학내부에 창업기업을 위치한 경우를 통상 실험실창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제2조 제5호 및 제18조의2)에 '실험실공장'의 정의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법규상에 교원창업과 관련한 실험실 등의 공간, 장비, 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정의)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5. 5. 18.〉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2010. 1. 27., 2012. 1. 26., 2015. 5. 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벤처기업의 창업자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창업교원은 대학의 공간, 시설, 장비 등을 창업기업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교원창업기업의 창업공간은 실험실 또는 대학 내 공간이어야 하는가?

❷ 창업교원은 자신의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❶ 교원창업기업의 대학 내 공간, 시설 및 장비 사용 사례

- **많은 국내대학이 교원창업기업의 창업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원창업의 허용장소를 교내 공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실험실창업의 경우 교내 공간을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 (A대학) 대학창업기업을 실험실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권을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 단과대학 및 대학본부 부서로부터 시설 및 공간 사용에 관한 확인을 받고 3년 이내의 범위(교원창업 최대 허용 기간)내에서 허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 (B대학) 교원창업기업의 창업공간을 교내 공간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외 공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❷ 창업교원의 본인 발명사용

- **교원창업기업이 대학의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대학은 창업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론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또한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기술의 완성도, 우수성, 대학 내부의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대학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국내사례)** A대학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0.3% ~ 3%의 경상기술료를 규정화한 대학도 있습니다.

› **(국내사례)** B대학의 경우에는 발명자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자가실시'라는 명목으로 규정화하여, 선급기술료는 특허비용+α로 하고, 경상기술료를 포함한 계약으로 진행하되 '자가실시'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대학의 경우 발명자 창업기업과의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은 비발명자 기업에 대한 유사한 기술이전 조건의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대학은 교원창업기업에 대해 대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과 대학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미국대학 대학자원활용 및 대학 지원에 대한 규정 |

- 특허에 투입된 비용을 동일하게 반환받음.
- 선급료와 경상료를 완화하여 적용함.
- 기술료를 단계별로 징수
- 교원창업기업으로는 특허양도를 하지 않음.
- 현금 없이 주식으로만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창업활동은 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연구를 목적으로 한 교원의 실험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다만, 창업초기에는 창업활동을 수월하게 하면서 교원으로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내공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은 교원이 창업활동과 연구활동을 모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현장수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업교원에게 교내 창업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창업교원이 발명한 특허라 할지라도 특허는 대학(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고 창업기업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학협력단과 기술사용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원창업기업의 지분을 대학에 기부하는 점, 초기 기업인 점 그리고 일반 타기업과 달리 해당 기술로만 창업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아 경상기술료 징구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선급료는 낮추고 경상기술료 위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어 창업기업의 초기 Risk를 대학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성공 시 이익을 대학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실험실 기반 대학(원)생 창업에 대한 대학의 지원

기본방향

- 실험실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대학–교원–학생 3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는 규정 제정 시 실험실창업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가능한 대학(원)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에서 대학(원)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원)생이 실험실에서 교수 및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물(논문 또는 특허)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실창업의 경우 연구결과물의 권리를 보유한 대학–교수–학생 간 이해관계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학(원)생 창업의 경우 실험실창업과 일반창업으로 분류되며, 대학(원)생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자유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창업의 경우는 갈등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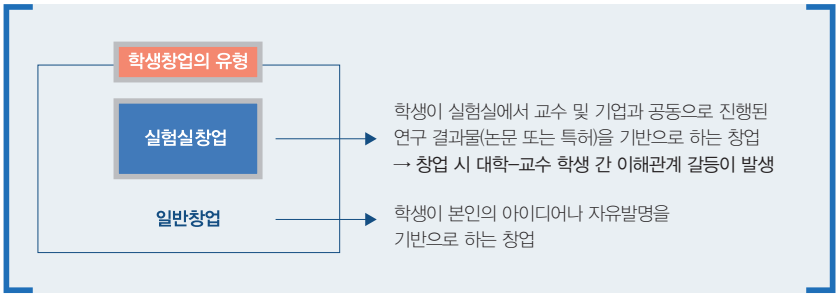

■ **한편, 대학(원)생이 재학 중에 창업하는 경우 학업과 창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며, 실험실 내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 실험실 참여인력인 석 · 박사생의 경우 논문을 써야 졸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논문작성에 드는 노력을 고려하면 창업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경우 교원의 승진 및 업적평가가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대학(원)생이 논문 대신 창업을 한다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실험실 내 동료 간에도 창업활동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동료 대학(원)생의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원)생은 교원과 달리 종업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창업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산학협동 연구과제 등에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특별법 및 관계법령과 연구협약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인 대학-교수-학생 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2017년 6월 고용노동부는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4다29736)를 인용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은 '학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만 돼 있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

출처: 대학신문 2017.09.03. 보도자료

■ **한편, 정부에서는 정책수립을 통하여 대학(원) 실험실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의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와 같이 대학생이 학업과 창업을 손쉽게 병행할 수 있는 학사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 5월에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실험실 창업지원을 위하여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확대하고, 석 · 박사생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사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주요 내용 |

학사제도명	주요내용	대상
창업휴학제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창업'을 학사규정 내에 마련하는 제도	대학생 대학원생
창업실습	창업준비와 학업병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현장실습	창업과 학업병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창업활동(창업기업 설립)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프로젝트 트랙	창업(준비)과 논문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준비)활동의 결과물로 논문을 대체하는 제도	대학원생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실험실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원)생 창업의 경우 대학–교수–학생 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원)생의 신분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은 교수나 교직원처럼 일정 직무에 대한 대가를 매개로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통해 대학(원)생에게 내부적으로 종업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수의 지도를 받는 석 · 박사급 연구원뿐 아니라 학부생까지 교직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1.〉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함)의 지식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며 교직원 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학생창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학생창업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창업휴학제, 창업현장실습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학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창업규정에 학생창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원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4. "학생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 제 3 장 학생창업 –

제18조(학생창업)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동등하게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대학교 창업지원 규정 제2절에 학생창업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창업지원 규정 |

제15조(학생창업 장려)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창업 지원)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② 총장은 학생창업자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학생창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포함한 학생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하대학교 학생창업에 대한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창업”이라 함은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이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또는 그 준비활동을 말한다.
2.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라 함은 창업휴학,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장학금 지급 등의 창업과 관련된 학사제도를 말한다.
3. “학생창업자“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단, 법인인 경우 사실상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4. “창업팀”이라 함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제품 제작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을 목적으로 지도교수가 배정된 2인 이상 10인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5. “창업휴학”이라 함은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한다.
6. “창업실습”이라 함은 동 규정 제4장에서 말하는 창업팀의 창업 준비활동을 말한다.
7.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동 규정 제5장에서 말하는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말한다.
8. “창업꿈나무장학금”이라 함은 창업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창업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중략)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실험실창업 과정에서 대학–교수–학생 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 내 규정 또는 지침 등의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능한 대학(원)생 창업도 교원창업과 동등한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험실창업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가능한 대학(원)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에서 대학(원)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상으로 기술실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원창업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형태로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과 학생창업기업의 목표일치(goal congruency)를 통한 상호 지원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분납부와 경상기술료 방식의 보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생은 대학과 협상을 하고, 교원과의 협상은 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권고안

❶ 대학(원)생이 실험실에서 교수 및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물(논문 또는 특허)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실창업의 경우 대학–교수–학생 간 갈등 발생

- **대학(원)생의 실험실창업의 경우에도 대학은 교원의 실험실창업에 준하여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방지하여야 합니다.**

  › 기술실시의 경우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가능하며, 양도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실시료를 정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실시 옵션을 대학이 제시하고, 가능한 학생의 선택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창업 이후 대학과 학생 간의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실시 계약은 양도보다는 지분 및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지분 및 경상기술료 방식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학생창업기업의 성장을 대학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창업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기술료는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는 시점부터 특허권 종료기간까지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교원창업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단, 기술이전 시점에 기술의 가치가 현저히 높은(1억원 이상) 경우는 별도의 형태에 의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되, 이 또한 교원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실험실 기반 학생창업 기업에 대한 교수 지분의 상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창업기업 지분에 대한 부분은 학생과 교수의 자본금 투자금액, 기술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개인 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대학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2016년 시행된 창업을 희망하는 5개 과기특성화 대학의 대학원생과의 심층면담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험실창업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창업 시 교수의 과도한 지분 요구를 지적하였습니다.
  - 실험실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교수의 현금출자가 없다면 교수 지분의 상한비율을 특정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지분(스톡옵션), 기술이전계약, 연구계약 등 다양한 협력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전략적 파트너 영입 등을 위해 지분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논문, 특허의 권리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기여가 있는 학생이 해당 기술을 통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례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의 개발에 기여한 경우는 특허 출원 당시 공동발명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추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

기업이 대학교수에게 발명을 의뢰하였고 지도학생도 발명에 관여하였는데 기업과 교수만 공동발명자로 하여 기업명의로 출원, 등록받은 것에 대해 지도학생이 특허지분이전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도학생에게 지분 30%를 이전등록 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❷ 대학(원)생이 재학 중에 창업하는 경우 학업과 창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며, 실험실 내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갈등 발생

- **대학(원)생이 학업과 창업(준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많은 대학에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였지만, 대학원의 창업프로젝트 트랙은 아직 구축이 미흡합니다.
  - 실험실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높은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창업(준비)활동의 결과물로 대체할 수 있는 창업프로젝트 트랙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사제도 전반의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학생창업 및 창업교육지원을 담당할 학생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인하대학교 학생창업에 대한 규정 사례 |

제3조 (학생창업지원위원회의 구성) 학생창업지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가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센터장, 교무제1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창업보육센터 팀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❸ 대학생의 자유발명에 대한 지원, 졸업 후 지원, 학생보호 등

- **정부재정지원사업 또는 교비를 통해 학생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의 역할은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원인과 발명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후 특허를 등록을 할 것인가는 학생이 결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과 학생을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했으나, 이후 등록비용 및 유지비용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대학이 등록 및 유지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단, 특허출원 과정에서 학생 단독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학생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을 출원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대학(원)생이 재학 당시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기술로 졸업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해당 대학(원)생에게 우선협상권 또는 우선실시권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학(원)생은 재학 당시 해당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기술을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원)생에게 우선협상권 또는 우선실시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대학 차원에서 기술사업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학생창업기업이 창업과정 및 내외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강요될 수 있는 과도한 지분요구 등에 대해 대학차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 · 수재 등 운영사의 위법 · 부당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 엑셀러레이터 또는 멘토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유형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 엑셀러레이터 및 멘토의 부적절 행위유형(예시) |

- 운영사와 창업팀 간 투자 및 지분 협상 과정에서, R&D 등 정부보조금을 대가로 하는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 수재)

  * 운영사 투자에 따른 창업팀 지분 취득 시 정부출연금 · 보조금 산입 절대 금지

- 운영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투자를 빌미로 부당한 금전이나 행위를 요구하거나, 운영사가 투자금을 가장 또는 차명으로 납입한 경우
- 운영사가 창업팀에 투자하면서 대표자 · 임직원 등에 대해 재무적 연대보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 운영사가 협약기간 내에 단순 이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다른 운영사에 창업팀 지분을 매각 (운영사 간 보육권 전매로 인한 차익 실현 금지)

〈출처: 중소기업청,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 2016.6.22.〉

PART03

기업 성장(Scale-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1. 교원창업 후의 연구활동
2. 교원창업 후 관리 및 지원

Part3
기업 성장(Scale-up)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

01 교원창업 후의 연구활동

기본방향

- 교원창업은 창업 이후 수업-연구-창업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실험실의 연구활동과 창업기업의 연구활동의 경계가 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학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창업교원이 창업 후 창업기업에서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에도 대학의 지재권 규정 및 대학창업규정 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창업기업의 경우 교원은 창업기업 소속의 종업원들과 함께 대학소유의 특허에 기반한 개량기술을 발명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발명의 소유권에 대하여 기업-대학-교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휴직 · 겸직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험실창업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구조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분야 등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에 해당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3. 3. 22.〉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교원창업기업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자는 기업인가? 대학인가?

❷ 기업과 연구실의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이 창업기업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❶ 교원창업기업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주체

- **교원창업기업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주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관련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해당발명을 교원의 직무발명으로 간주하고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A대학은 교원창업기업이 발명한 지식재산권도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따라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이의 경우에도 교원창업 시점에 소유특허의 직무발명 허용범위를 명확히 사전 정의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 **B대학은 교원이 창업기업에서 개량 발명 또는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창업기업과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을 거쳐 대학과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공동소유 시 창업기업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창업기업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창업기업에서 지원받는 연구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교원이 창업휴직인 경우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회의 Q&A에 따르면 '휴직인 경우는 원 소속회사의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직 중이라도 근무 중에 취득한 내용으로 발명을 하였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발명진흥회 Q&A |

Q)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A)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이다.

› 피고는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다.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9. 03. 11.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다.

A)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Y2는 사내창업 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연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 동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❷ 교원의 겸직활동에 따른 학생과 교원 간 이해갈등

미국대학의 경우는 연구실과 교원창업기업 간에 강한 방화벽을 설치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대학의 경우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자신의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이용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교원창업기업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대학 교원창업규정 주요 내용 |

› 교원창업기업이 창업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부과제에 자신의 창업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음. 단, 기업의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교원창업기업을 위한 개발연구를 대학에서 진행할 수 없음.

› 교원창업기업의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활동에 의한 결과물은 창업기업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대학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 창업기업으로부터의 구매내역은 소속학과장에게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창업교원은 구매결정 과정에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국내 대학의 경우 창업기업과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활동에 대해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제10조(교직원창업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 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는다.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창업자로서 외부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의 양해 후에 당해 연구비를 창업기업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❶ 교원창업기업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주체

■ **교원창업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학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절차,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학의 종업원인 교원이 제3자인 교원창업기업 및 종업원과 공동발명을 한 경우에 대학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출원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합니다. 만약 교원이 창업 겸직 상태에 있다면, 교원은 대학의 종업원이면서 창업기업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대학과 창업기업이 공동출원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발명자는 교원을 포함한 발명에 기여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출원, 등록, 유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❷ 교원의 겸직활동에 따른 학생과 교원 간 이해갈등

- **연구개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학(원)생의 연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미국대학의 경우는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및 과제 관련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을 남겨두어 대학에 보고 및 승인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02 교원창업 후 관리 및 지원

기본방향

- 교원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 이후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대학은 교원창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창업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교육, 연구 등)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창업교육의 의무사항을 관련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원에 대한 창업승인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업교원은 창업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이슈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겸임 ·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원의 신분입니다.**
  - 따라서 교원창업 후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에 보고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창업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원창업기업의 성장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이슈가 존재하며,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창업기업의 사후 보고와 관련된 법규는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원창업규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❶ 교원이 창업 후 대학에 언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대학이 교원창업 승인을 어떠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❷ 대학이 교원창업기업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❸ 창업한 교원이 대학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창업교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❶ 교원창업기업의 보고 관련

■ 해외의 주요 대학에서도 교원창업기업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대학의 모든 교수들은 매년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의 학장으로부터 책임충돌(conflict of commitment)과 이해충돌에 대한 대학의 정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외부기관과 새롭게 발생한 금전적 관계 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전적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학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또한, 단과대학장은 교수들이 신고한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연구처장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매년 신고되는 서류와 연구처장과 함께 작성한 해결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처장이 내린 결정에 항의하고자 하는 교수는 교무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교무처장은 학술위원회 자문단(Advisory Board of Academic Council)에 자문을 받아서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교원의 창업 후 보고는 정기보고, 수시보고로 구분됩니다.**

› (정기보고) 교원창업기업이 대학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제17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② 교직원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원창업 규정 |

제14조 ① 창업교원은 당초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창업지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교원창업기업은 일정 기간 이내에 대학에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는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변경통보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 규정 내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창업기업의 경영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통보를 받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교원창업후 교원이 대학에 보고할 사항(예시)〉

1. 사업 계획의 변경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4.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5. 자진 퇴거, 기타 회사의 주요 변경사항

›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사업계획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원창업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산학협력단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기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교원창업기업이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상기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 통보 관련 요청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단,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제17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직원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

제13조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수 창업자(기업)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포항공대 창업규정 |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대학은 창업교직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② 창업교직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기 1항의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❷ 교원창업기업의 승인취소 관련

교원의 근본적인 업무는 교육과 연구이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창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창업 승인 이후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제15조 (창업 승인의 철회) ① 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이 창업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학기술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 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

제7조 (창업승인 취소) 창업 승인을 받은 자(또는 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 제9조에 의한 겸직 또는 휴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2. 규정 제8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규정 제11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4. 창업 신청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❸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 교원창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과 연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학 보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나아가 창업과 교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교원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

제14조 (교직원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겸직 기간 내의 교원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창업기업에게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창업보육 전용공간의 사용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 서울대학교 창업규정 |

제11조(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교원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공간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❹ 교원창업기업의 재정적 기여

■ 교원창업에 대한 일부 교직원의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원창업기업의 성장에 따른 대학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여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원창업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창업기업의 성장이 대학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기여보다는 주식기부 등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

– 제3장 재정적 기여 –

제16조 (재정적 기여) 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 기업의 주식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 및 기술이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 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 자본금은 당해 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수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자본금에 (2%–[1.5%×(자본금–1억 5천만원)/자본금])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 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 · 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수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급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기업이 주권 미발행 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① 교수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② 당해 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③ 위원회에서 당해 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건을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19조 (기술이전의 실시) ① 교수 창업자는 창업 후 매 1년마다, 기술이전을 통해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단 창업 2년 이내에 교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인하대학교 교원창업 규정 |

– 제4장 재정적 기여 –

제18조 (재정적 기여) ① 교원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의 주식 일부를 무상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제19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 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 자본금은 당해 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수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자본금에 (2%–[1.5%×(자본금–1억 5천만원)/자본금])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3%,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 · 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원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한다.

1.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2. 당해 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3. 위원회에서 당해 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21조 (산학협력발전기금 출연) ① 제18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교원창업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하여야한다.

② 교원창업회사는 창업 3년 이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무상증여로 재정적 기여 방법을 전환한다.

제22조 (준용규정) 교원창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내 관련 규정과 관리기관 지침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❺ 교육 및 연구 성실의무

- **교원의 창업승인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 ›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 대학자원이 영리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창업교원의 의무'를 주지하고 관련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 본연의 활동(강의, 연구, 학생지도)을 주요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창업활동으로 인해 이것이 소홀히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구본진 등, 2018).

› 우리나라의 일부대학도 교원창업규정에 창업교원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포항공대 교직원 창업규정 |

– 제3장 창업교직원의 의무 –

제10조 (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교직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지도)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수는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

–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4조 (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벤처기업 · 실험실창업이나 실험실공장의 설립에 따른 운영으로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창업교원은 대학 교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교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④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권장사항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교원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교수의 신분으로 대학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창업 이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학은 교원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원창업 관련 규정은 ① 보고(정기보고, 수시보고) ② 창업승인의 철회 ③ 창업지원 ④ 재정적 기여 ⑤ 교육 및 연구 성실의무를 포함하되,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교원에 대한 창업승인은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업교원은 창업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구본진 등(2018), 대학 교원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기술혁신연구, vol.26, no.1

김미경(2013),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법과 정책연구 제13편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나동규(2014),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상 학생의 공동발명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박준석(2010),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33호

박지환(2015),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특허청

日本 特許廳(2016. 4.), 改正特許法第35条第6項の指針(ガイドライン)

정차호 등(2017), 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참고자료

|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 서문〉

본 가이드라인(안)은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의 교원 및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특성화대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특성화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초안으로서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후, 과기특성화대학별로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 할 예정임.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기특성화대학(이하 과기대)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의〉

과기특성화대학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창업규정이 미비했던 과기특성화대학의 창업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의 범위는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다.
3.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학생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과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의의〉

교원창업 : 과기특성화대학의 교원(교수,연구원)이 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이 개발한 대학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까지 교원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결권있는 주식 50% 이상 소유)도 창업의 범위에 포섭하여 본 가이드라인 상 의무를 이행토록하여 대학 보유기술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학생창업 :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각 과기대에서 정하여 명시한다.

| 제2장 교원창업 |

제4조 (교원창업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과기대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이 창업 시 과기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의〉

입사 후 일정기간 (3년 후) 지난 자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년미만의 교원도 학과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통과하면 창업이 가능).

제5조 (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신청자 소속 학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허여 신청서
4. 휴겸직 신청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6조 (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을 받은 소속학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학과/전공인사심의회의 심의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주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1. 창업 휴겸직 허용여부
2. 겸직허가 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③ 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기술이전계약부서, 단과대학, 소속학과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④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원창업대상기술은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과기대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1항에는 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의의〉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과 공동소유권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공동기술을 창업대상기술로 함.

제8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 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과기대과 체결한다.

② 창업대상기술을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의〉

기업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기술이전 형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창업촉진을 유도함.

제9조 (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과기대 교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창업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로 하고 학과/전공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②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되거나 겸직이 종료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겸직허가 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조정 기준은 각 과기대에서 정한다.

〈의의〉

- 교원이 대학보유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경우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증대하는 등 공익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최대 6년의 휴직과 무기한 겸직이 가능토록 함.
- 휴겸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금지하여 교원창업을 활성화 함.
- 겸직 후 창업활동 병행 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적정한 비율을 각 과기대별로 정하여 창업활동과 교육연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제10조 (교원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제2조 3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반드시 제5조 내지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과기대의 기술을 유용한 때에는 과기대는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과기대 기술사업화에 사용해야한다.

제11조 (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기대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기대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과기대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의의〉

대학의 보유기술을 이용한 창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업자의 창업 지원 측면에서 대학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하므로 창업자의 창업승인신청을 의무화함, 또한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고 대학의 기술사업화 관리 체계를 강화함.

제12조 (교원창업지원) ① 과기대는 겸직기간 내의 교원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기대는 교원창업기업에게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기대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의의〉

과기대 내부인의 연구기자재 사용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교원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제13조 (창업 승인의 철회) ① 과기대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기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기대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의의〉
창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승인 철회의 근거를 둠.

제14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과기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기대는 지재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 과기대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의의〉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시 과기대에 통보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과기대에서 정할 수 있게하여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유실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함.

제15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원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교원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의〉
창업기업의 변경사항과 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창업기업의 활동을 추적관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3장 학생창업 |

제16조 (학생창업휴학)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4학기 동안 창업휴학을 할 수 있고, 재심의를 통해 4학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을 합한 기간이 총 8학기를 넘지 못한다.

② 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 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의〉
· 학생이 일반휴학기간(통상2년)의 부족으로 창업기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복학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여 최대 4년 동안 휴학할 수 있도록 함.
· 창업휴학 시 기숙사 등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휴학생이라도 교내에서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과기대는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기술창업 커리큘럼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창업휴학의 승인)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9조 (학생창업 지원) 과기대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생창업자(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생창업기업의 의무 등) ①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창업자는 재학 및 휴학기간 동안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의〉

창업기업의 변경사항과 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창업기업의 활동을 추적관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4장 기타 |

제21조 (통계의 관리 등) ① 과기대의 주관부서는 교원 · 학생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 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제 규정과의 관계) ①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집필진 |

김승군 이사(이산컨설팅그룹)
김훈배 실장(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고혁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심경수 교수(고려대학교)

| 검토 · 자문 |

구태용 센터장(한양대학교)
김성근 팀장(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박소영 변호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지훈 사무국장(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정영룡 수석(전남대학교)

| 기획 · 편집 |

최태진 실장(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
문덕현 팀장(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이한중 연구원(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이재용 사무관(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발행일: 2019년 7월
인쇄일: 2019년 7월
발행인: 노정혜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가　격: 비매품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인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56 디자인범신 042)254–8737

이 책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